

####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

EINE AYAREN

http://www.motie.go.kr 2017년 4월 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2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2017. 3. 31(금)

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, 세계무역기구과 담당과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정석진 과장, 이보하 연구사(043-870-5521) 당자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박성진 과장, 이상엽 주무관(044-203-5635)

### 신업부,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계기에 기술규제 애로 해소

- 사우디, 브라질 등 11개국 16건의 규제 완화 또는 철회 확인 -
- 중국에 대해 불합리한 기술장벽 해소와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 -
- 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'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 위원회 정례회의 계기에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.
  - \* TBT(Technical Barriers to Trade) :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
- o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,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TBI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(STC)으로 공식 제기 하였다.
- \* STC(Specific Trade Concerns):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

#### [특정무역현안 안건]

중국: ①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, ②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,

③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

인도 : ④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, ⑤ 과도한 가전제품 재활용의무화,

⑥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

○ STC 6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해외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서는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전개하였다.

[양자협의 안건] ① 중국(표준화법 등 10건, STC 의제 3건 포함), ② 사우디(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 6건), ③ 인도(2차 전지 안전 등 4건), ④ UAE(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등 2건), ⑤ 이집트(에너지효율 등 2건), ⑥ 싱가포르물소비 효율 등 2건), ⑦ 베트남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등 2건), ⑧ 태국 (타이어 품질인증 등 2건), ⑨ EU(에코디자인 규제 등 2건), ⑩ 브라질·대만·케나·칠레 ·우크라이나 각 1건

- □ TBT 위원회 기간중 양자협의 결과, 사우디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하였고, 인도, 사우디 등 2개국의 4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 등 향후 긍정적 검토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.
- 특히, 최근 중국의 각종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별도 협의를 갖고 불합리한 무역기술 장벽의 해소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하였다.
  - 협의 결과 중국측으로부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하던 지방 정부별 배기가스 규제 조기시행(중앙정부 '20.7월 시행)이 없음을 공식 확인하였다.
  - 기업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, 향후 개정안 마련 시 우리 기업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하였다.
  - 한편,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,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 하였다.
- 아울러, 사우디, UAE, 이집트 등의 전자제품, 식기세척기, 냉장고의 에너지효율 적용대상 및 판정기준을 명확화하고, 시행시기를 유예 하는 등 수출 확대 애로 요인을 개선하였다.
- □ 이번 주요국과의 TBT 협의 결과 규제개선 또는 유예로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비용절감, 규제 대응시간 확보, 인증 시간 단축 등의 비관세장벽(기술규제) 해소로 수출확대와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
- ㅇ 사우디는 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데, 이 규제의 적용이 어려운 제품들의 제외를 요청하는 우리측 의견을 받아들여 두께 0.25mm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하기로 하고 시행도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다.
- 브라질의 텔레비전 안전·에너지효율 규제('17.4월 시행)는 대기전력 사후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(0.1~0.9W의 5%이내)하므로, 이를 최소에너지성능기준(1W의 5% 이내)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.

- 이 외에도, 오는 4월부터 시행예정인 UAE의 식기세척기 물효율 규제와 이집트 에너지효율 규제는 우리기업들이 수출 준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UAE는 '17.8월로, 이집트는 '18.4월로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.
- 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 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- ① 4월중 관계부처, 업종별 단체, 개별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협의결과를 설명하고, 개선된 규제를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.
- ② 미해결 해외 규제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채널(한·중 적합성소위, 한·EU 규제대화체 등)을 활용하여 협의하고, 민·관 합동 대표단이 규제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협의할 방침이다.
- ③ WTO TBT 위원회 회의가 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場이라는 점을 감안, 제2차 위원회(6.13~15일)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과 협의하여 신규 기술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미해결 규제를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이보하 연구사(1270/43-870-5521)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이상엽 주무관(1270/44-203-56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3 -



### 참 고 WTO TBT 위원회(17.3월) 주요 협의내용 (14개국 37건)

## □ 규제 철회 또는 완화(16건)

| 국가   | 규제명                   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 | 협의결과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중국   | 표준화법 개정                |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<br>기업표준 공개 의무 조항 삭제 및<br>공개 수준 최소화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규정명확화) 기업표준의<br>비공개 처리계획 및 표준화법<br>개정안의 WTO 통보·의견 수렴<br>약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배기가스 배출 규제             | 지방 정부의 규제(China6) 先시행<br>일정 문의   | (시행유예) 지방정부별 배기가스<br>규제 선시행(중앙정부 `20.7월 시<br>행) 계획 철회  |
| 사우디  | 대용량 에어컨 에너지<br>효율 규제   | 제품 등록 소요시간, 사후관리<br>허용오차, 시행일 및 시행 기준 등<br>정보 부족으로 준비에 애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규정명확화) 규제 관련 시행일<br>(17.10월)확인 등 정보 제공  |
|      | 산화생분해성<br>플라스틱 규제      | 시행일 확인(1년간 시행유예 여부)<br>산화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용이<br>어려운 15개 제품을 규제대상에서<br>제외해 줄 것을 요청              | (규제개선) 두께 0.25mm 이상<br>제품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<br>및<br>시장에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<br>1년간 시행유에 부여(17.4월<br>→18.4월) |
|      | 전자제품 및 자동차<br>에너지효율 규제 | 고효율 모델의 정의 및 기준과<br>관련하여 '16년 3차 회의시<br>사우디가 제공한 정보사이트<br>접속이 불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| (규정명확화) 고효율 제품 판정<br>기준 및 정의 정보 제공   |
|      | 타이어 에너지효율<br>규제        | GSO-SASO 통합 진행 현황 문의<br>비용지불 프로세스 개선 요청(해외<br>납부 및 미화 허용)<br>라벨 비용 청구서(인보이스) 통합<br>발행 요청 | (규제개선) 라벨비용 청구서 통합<br>발행 개선 약속(개월 내<br>인증발급 시스템에 반영)   |
| UAE  | 식기세척기<br>에너지효율 라벨링     | 시행기준, 등급 결정 기준, 최저<br>허용기준 도입 여부 등 일부<br>규정이 모호함<br>규제대응기간 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규정명확화) 시행기준, 등급<br>결정 기준, 최저허용 기준 도입<br>등 모호한 규정 명확화<br>(시행유예) '17.4월 → '17.8월<br>(1년유예)        |
| 이집트  | 냉장고 에너지효율              | 규제시행일 정보 제공 요청<br>공포 후 최소6개월 유예기간 제공<br>요청   | <b>(시행유예)</b> '17.4월 → '18.4월(1<br>년 유예)   |
| 싱가포르 | RoHS 규제                | DoC 양식 및 제출의 <b>구체적</b><br>절 <b>차</b> 에 대한 빠른 <b>정보 제공 요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규정명확화) 관련 절차 가이드<br>제공 확보   |
|      | 물효율 라벨 규제              | 신규 등록시스템 및 등록절차<br>정보제공 요청<br>구라벨 교체 대상, 시기, 마감일<br>등 경과조치 정보 제공 요청                      | (규정명확화) 신규 등록시스템<br>개설 시점 및 등록절차 정보<br>제공 확보   |
| 베트남  | 전자제품 에너지효율<br>인증       | 기인증 제품에 대한 경과조치<br>문의<br>신규라벨 도안 제공 요청   | (시행유예) 규제 개정 후에도,<br>유효기간이 남은 전자제품 에너지<br>라벨 사용허가  |

- 4 -

| 국가  | 규제명              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  | 협의결과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태국  | 타이어 인증            | 유럽 인증 마크(E마크)를 인정해<br>줄 것을 요청   | (규제개선) 우리기업이 기 취득한<br>유럽 E-mark 시험성적서를 인정<br>및 스티커 형태의 라벨 부착<br>허용 |
| 칠레  | 텔레비전 에너지효율<br>규제  | 제조자가 최소 허용기준(0.5W) 내의<br>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에너지<br>소모량을 라벨에 표기할 수 있도록<br>제도 개선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규제개선) 대기전력 표기기준<br>이 1W 이내일 때 소수점 둘째<br>자리로 명기하여 합리화              |
| EU  | 반도체 PFOA 사용<br>규제 |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기 설계된<br>예비 부품에 대한 PFOA 사용의<br>예외 조항 포함 요청   | (규제개선) 예비부품에 대해<br>PFOA의 사용제한 철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브라질 | TV 적합성평가절차<br>규제  | 대기모드 소비전력 사후관리<br>기준을 EU, 요르단, 터키 등<br>다른나라와 같이 0.6W 수준으로<br>개정 요청  | (규제개선) 대기전력 사후관리<br>기준 완화 (측정값의 5%이내에서<br>최소에너지성능기준값(1W)의<br>5%이하) |
| 대만  | 절수라벨 규제           | 시험소 부족으로 인해 '17.7월까지<br>규제 준수가 어려우므로 추가<br>3개월 시행 유예기간 요청<br>절수라벨 인증신청절차 개선<br>요청(현행 매월 5일<br>접수 → 상시 접수) | (규제개선) 기업의 라벨을 상시<br>신청 가능하도록 접수제도 개선<br>(월 1회 → 상시 접수)            |

# □ 긍정검토(4건)

| 국가  | 규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  | 협의결과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사우디 | 가전제품<br>에너지라벨링 규제              | 사후관리 시 기준값으로 사용되는<br>라벨 표기값을 제조자가 결정할<br>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  | (궁정검토) 라벨 표기기준 개선<br>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검토하<br>여 개정할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세탁기 물소비효율<br>규제                | 수동 급수 방식인 <b>트윈탑 세탁기</b><br>물 소비량 규제 적용 불합리 →<br>적용 제외 요청<br>시행일, 시행기준, 사후관리<br>허용오차 등 정보 제공 요청 | (긍정검토) 라벨 표기기준 개선<br>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검토하<br>여 개정할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도  | 2차 전지 안전 규제                    | 안전인증 사후관리 시 10일<br>이내로 샘플 현지 송부 요구에<br>대한 기한준수의 어려움   | (긍정검토) 사후관리 시 샘플<br>제출 기간 연장(10일→20일) 및<br>전자파일 시험성적서 인정에<br>대해 긍정검토 회신 |
|     | 배터리 및 배터리<br>적용제품 BIS 인증<br>규제 | 안전인증 시 셀시험과 팩시험을<br>순차적으로 별도 시행하여 30주<br>이상의 과도한 인증 취득 기간<br>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 <b>긍정검토)</b> 인증시간 단축(30주<br>→24주)에 대한 긍정 검토<br>회신                     |

- 5 -



# □ 지속 추진(17건)

| 국가  | 규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  | 협의결과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국  | 신에너지 차량 제조자<br>및 제품의 진입<br>관리규정 | 엔진 생산기술 이전을 위한 최소<br>3년 이상의 <b>시행 유예 요청</b> 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    | 화장품 라벨관리 방법                     | 라벨에 표기된 효능을 제3자가<br>검증하도록 의무화하여, 비용<br>증가 및 기업비밀 유출을 우려 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    |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                    | 효능광고 근거자료를 홈페이지에<br>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, 기업비밀<br>유출을 우려 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    | 의료기기 등록<br>관리방법                 | 한국의 주소개편(도로명)으로 의료<br>기기 생산지 주소 변경이 필요하나<br>허가항목으로 비용(약 1천만원) 및<br>2~3개월 시간 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식품안전법 실시조례<br>개정                | WTO TBT 통보 및 의견 수렴절차<br>진행 요청 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    | 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                    | 의료기기 허가·등록 시, 해외 기업에<br>중국기업 대비 2배의 수수료 요구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    | 의료기기 감독관리<br>조례                 |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으로 비용<br>및 시간소요 부담 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    | 영유아용 조제분유<br>성분 등록 규제           | 기업별 3개 브랜드, 9개 제품으로<br>판매가능 제품수를 제한하여 수출<br>기업 피해 우려(우리나라는 3개사<br>에서 98개 제품을 수출 중)<br>CNCA와 CFDA의 등록절차가 중복<br>되어 애로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인도  | WEEE 가전제품 재활용<br>규제             | WTO TBT 통보 없이 규정이 개정되<br>어 준비시간이 부족하므로 <b>시행 연</b><br>기 및 목표 회수물 완화 요청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    | 타이어 안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| 인도 외 수출타이어에 대한 인증<br>수수료 요구 및 해외기업에 대한<br>은행 보증료 요구 철회 요청 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UAE | RFID형<br>에너지라벨 규제               | 라벨 원본 및 RFID 도안 디자인 등<br>정보 제공 요청<br>RFID 의무화 도입 철회 요청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
- 6 -

| 국가        | 규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요구사항 (기업애로)   | 협의결과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집트       | 텔레비전 에너지효율<br>규제           | 시행일, 시행기준, 에너지 효율<br>등급 산정 기준, 라벨 도안, 제조자<br>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등 규제<br>내용 명확화 요청<br>MFM(multi fuction monitor) 및<br>일반 모니터가 규제 대상에 포함<br>되는지 문의. (즉, Tuner가 있는<br>모니터만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)  | 해당국의 규제당국에서 검토<br>후 회신 |
| 베트남       | QCVN 타이어 규제                | 시행시기 문의 및 규제정보 제공<br>요청  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          |
| 태국        | 전자제품 에너지라벨<br>제도           | 인증 취득 시험기간 단축(2주<br>이내)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요청<br>에너지효율 등급내의 범위에서<br>라벨 표기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<br>제도 개선 요청<br>전자파일 형태의 라벨 판매 요청  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          |
| EU        | 전자 디스플레이<br>Echo Design 규제 | (에너지효율기준 완화) 온모드 소<br>비전력, 대기전력 기준을 완화하고<br>조도센서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<br>benefit 적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<br>요청<br>(규제대상 적용 제외 요청) 다른<br>제품에 장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와<br>8건치 이상의 TV(UHD)의 규제<br>적용 제외 요청<br>(QLED의 Tier 1 적용 요청) QLED<br>제품 특성 상 제조과정과 사용과정<br>에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제품<br>이므로 Tier 1 적용 대상에 포함<br>요청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케냐        | 에너지 성능 및 라벨<br>규제          | 에너지라벨 등록 사이트(웹포털)이<br>운영되고 있지 않아, 라벨 취득이<br>불가능하므로 포텔 개설 후 최소<br>6개월의 시행유예기간 요청<br>라벨도안, 인증취득 예상<br>소요기간, 일런번호 부여방식 등<br>정보제공 요청 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          |
| 우크라이<br>나 | 에어컨 에너지효율<br>라벨 규제         | 우크라이나측이 라벨 부착 의무화<br>시행을 예고한 '17.1월 이후에도<br>최종안이 공포되지 않아, 준비에<br>애로   | 규제당국 검토 후 회신           |

- 7 -

